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
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지원 신규사업(2023.09.01.~) 실시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신청기준 등이 상이하여 제반사항을 일원화 하여 우리구 서비스
대상자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제4조) 및 신청(제7조)을 서울시 사업과 동일
- 나.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지역보건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3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전화 : 02-3396-5678, 팩스 : 02-3396-8902, 전자우편 : odi45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출산일”을 “신청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를 “6개월(180일) 전부터 현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산일”을 “신청일”로, “6개월(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를 “6개월(180일) 전부터 현재”로 한다.

제5조 단서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제1항 중 “6개월”을 “6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p> <p>1. 산모는 <u>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u>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p> <p>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u>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u>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지원 기준) <u>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정액 100만원을 지원한다.</u>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p>	<p>제4조(지원 대상) ① ----- ----- ----- -----.</p> <p>1. ---- <u>신청일</u>-----6 <u>개월(180일) 전부터 현재</u>----- ----- -----</p> <p>2.----- ----- ----- ----- <u>신청일</u>----- ---6<u>개월(180일) 전부터 현재</u>-----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 기준) <u>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u> ----- -----</p>

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

----- 60일 -----

-----.

② (현행과 같음)